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313282 판결 [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4. F

5. G

피고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

변론 종결2024. 11. 20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는 59,034,291원 및 그 중 57,836,862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19,678,096원 및 그 중 19,278,954원에 대하여,

다. 피고 E, F, G은 각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13,118,731원 및 그 중 12,852,636원에 대하여

각 2024. 3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.5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유신

별지